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97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 민형배·김민철·김병욱

김성환 · 김철민 · 박완주

변재일 · 신정훈 · 윤후덕

이정문・정춘숙・주철현

한병도 · 홍익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여 종 합합산과세의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토지는 대상 이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 역시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주요 기반시설로서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6조제1항 제3호바목).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중 "공급"을 "공급(「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	
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3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	
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에너지·자원의 <u>공급</u> 및	바 <u>공급(「신</u>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	<u>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u>
으로 정하는 토지	<u>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u>
	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사.・아. (생 략)	사.・아.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